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도참고자료

희망의 새시대

http://www.motie.go.kr

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에너지수요관리협력과 나성화 과장(2110-3935), 최성환 주무관(2110-3938)

12월 16일부터 겨울철 “에너지사용 제한조치” 시행
-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는 1.2일부터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윤상직)는 겨울철 전력수급 안정을 위한 에너지 사용제한 조치를 금년 12월 1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힘

○ 정지 원전(신고리 1.2호기, 신월성 1호기)*의 연내 재가동 여부에 따라 겨울철 전력수급 불안이 고조될 수 있어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난방온도 18도 제한,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, 조명사용 제한 등을 시행하고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대표적인 에너지 낭비 사례인 “문 열고 난방영업”하는 행위에 대해 제한하는 의무가 부과될 예정임

* 연내 재가동시 500만kW 예비력 확보가 가능하나 재가동 지연시 수급불안 발생

○ 특히 이번 동계 조치에서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계약전력 100kW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에 대해 적용해오던 겨울철 난방온도 20도 제한 의무를 없애고 대신 전력피크시간(10시~12시, 17시~19시)에 20도 이하로 자율 준수하도록 권장할 방침임

○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는 12월 16일부터 시행하되 문 열고 난방영업 위반업체에 대한 과태료(최대 300만원)* 부과는 내년 1월 2일부터 적용할 예정임

* (최초) 경고→(1회) 50만원→(2회) 100만원→(3회) 200만원→(4회 이상) 300만원

□ 에너지사용제한 조치의 세부내용을 보면,

① 난방온도 제한(공공) : 공공기관(2만여 개소)은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를 18도* 이하로 제한하고 근무시간 중 개인전열기 사용을 제한함

* 단, 가스난방, 지역난방 등 非전기식 난방을 사용하는 경우 실내온도 20도 적용 가능/ 임산부, 병약자 등에 대해서는 개인전열기 사용 허용

② 난방온도 권장(민간) : 계약전력 100kW 이상 전기 다소비 건물은 난방기 가동시 전력피크 시간대(10~12시, 17~19시) 실내온도를 20도 이하로 유지할 것을 권장함

③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(민간) : 난방기를 가동한 채 출입문을 열어놓고 영업하는 행위를 금지함

④ 조명 사용제한(공공) : 공공기관의 홍보전광판과 경관조명은 오후 피크시간대(17시~19시)에는 소등하여야 함

⑤ 야간조명 소등 권장(민간) : 매장, 점포, 상가, 건물 등 사업장은 영업(업무)이 종료된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명 소등을 권장함

□ 산업부는 그동안 강도 높은 에너지사용제한 조치로 국민들의 절전 피로가 누적되어 온 점을 감안해 국민들의 일상생활 불편이 가장 큰 실내 온도 제한 의무를 자율 권장사항으로 전환 하는 한편

○ 문 열고 난방 영업하는 행위와 같은 에너지 낭비사례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바로잡아 나가겠다고 밝혔음

○ 또 국민 계도식 에너지 절약 대책에서 탈피해 앞으로는 전력저장장치(ESS), LED 등 고효율기기, 전력부하관리 기기 보급*을 확대해 과학기술을 활용한 시스템적 에너지 절약 대책을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임

* 연말까지 13개 기관에 12MWh 용량 ESS 설치(165억원), 전력다소비 업체 ESS 투자유도
* LED 70만개 추가 보급 및 가스히트 펌프, 최대전력관리장치 등에 80억원 보조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절약협력과 최성환 주무관(☎ 02-2110-3938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붙임

'13년 동계 에너지사용제한 공고 요약

□ **시행기간 : '13.12.16 ~'14.2.28(11주간)**

- 난방온도 제한(공공), 문열고 난방영업 제한*, 조명 사용제한(공공) 실시

* 문 열고 난방영업 금지 계도기간은 12.16~12.31(2주), 과태료 부과는 '14.1.2 ~ 2.28(9주)

구 분	제한대상	제외대상	제한내용
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	• 공공기관(2만여개소)	공항, 교육시설, 민원실, 의료기관, 콜센터, 학교 등	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℃이하 유지(단, 가스난방, 지역난방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20℃ 이하 유지) 개인전열기 사용 제한 (장애인, 임산부 등 제외)
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(12.16~2.28) *1월2일부터 과태료	• 외기와 출입문이 접한 점포, 상가, 건물 등	난방기미설치업장, 지하도상가 등	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
공공기관 조명 사용제한 (12.16~2.28)	• 공공기관(2만여개소)	공항, 교육시설, 민원실, 의료기관, 콜센터, 학교 등	오후 피크시간대(17:00~19:00) 홍보전광판, 경관조명 소등
민간부문 권장사항 (12.16~2.28)	• 계약전력 1백kw이상 (약6.8만여개소)	공동주택, 공장, 군사시설, 사회복지시설, 유치원, 의료기관 등	피크시간대(10~12시, 17~19시) 실내온도 20℃이하 유지
	• 점포, 상가, 건물 등	없음	영업(업무) 종료 후 옥외광고물 및 경관조영 소등